

## [시행 2019. 2. 15.] [총리령 제1522호, 2019. 2. 15., 일부개정]

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기준과) 02-397-7303 원자력안전위원회 (생활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4 원자력안전위원회 (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7 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정책과) 02-397-7264

- **82** ( )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(이하 "설계승인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 5. 3.〉
-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〈개정 2018. 5. 3. 〉
- 1. 설계의 개요 및 설명
- 2. 설계도면
-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8. 5. 3.>
- 1.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
- 2. 방사선기기의 재질, 구조 및 안전성 평가
- 3.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
- 4.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 · 보수절차
- ④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<개정 2018. 5. 3.>
- ⑤ 법 제60조제3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말한다. <개정 2018. 5. 3.>
- ⑥ 제5항에 따른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및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만 제출한다. 〈개정 2018, 5, 3,〉
- ⑦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 5. 3.〉
-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, 안정성평가자료,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〈신설 2018. 5. 3.〉
- **85** ( )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시험·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
- 2. 시험 · 검사에 관한 설명서
- 3. 설계승인서
-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 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5. 3.]

- **110** ( ) ① 영 제114조제1항제1호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"란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.
- ② 영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"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.
- ③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

- ④ 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검사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제1522호, 2019. 2. 15.>

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